

의안번호	2214670
의 퇴 인	김남근의원
회 답 일	2025.12.9.
추계번호	25D627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자 보상금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3억 2,400만원, 2031년 73억 2,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66억 2,500만원(연평균 73억 2,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7,324	7,325	7,325	7,325	7,326	36,625	7,325

주: 본 추계는 공익신고제도 교육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의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5호나목(정의)	부패행위의 범위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함	의무규정
	안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부패행위의 신고 기관에 공공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추가함	의무규정
2	안 제12조(기능)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무규정
3	안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보상금은 비용의 절감액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조제5호나목(정의)	×	부패행위의 유형과 신고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그 처리를 위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부패행위 신고 총량과 기관별 처리 건수를 추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안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2	안 제12조(기능)	○	—
3	안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교육의 실시(안 제12조 제22호)와 신고자 보상금(안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교육의 추가재정소요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제도 교육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2] 공익신고제도 교육 예산: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내역	산출근거	예산액
공익신고제도 교육	공공, 민간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10,000원×2종×500부	10,000
	업무매뉴얼,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	4,923원×2종×500부	4,923
	단수조정	-70,000원	△70
	소계	—	14,85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본 추계에서 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30%)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최근 5년(2020~2024년) 부패신고자 보상대상가액의 평균(33,486,247천원)에 보상률(30%)을 적용한 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의 평균(2,736,600천원)을 차감하여 추정함

[표 3] 부패신고자 보상금 예산액 및 보상대상가액 현황: 2020~2024

(단위: 건, 천원)

구분	신청	처리	결정		예산액	보상대상가액	지급액
			지급	기각			
2020	1,425	1,558	237	18	3,108,000	45,956,111	3,835,687
2021	2,280	1,773	485	35	2,457,000	40,862,696	3,397,868
2022	2,971	2,796	477	34	2,557,000	17,837,807	2,838,124
2023	2,628	3,399	597	107	2,697,000	40,455,998	4,048,434
2024	430	461	228	52	2,864,000	22,318,625	2,628,320
평균	-	-	-	-	2,736,600	33,486,247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교육의 추가재정소요는 소비자물가 상승률¹⁾을 적용하여 추정함. 다만, 보상금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교육(안 제12조제22호)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익 신고제도 교육 예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공익신고제도 교육 예산) 2025년 기준, 14,853천원
- 추계결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교육의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교육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추가재정소요	15	16	16	16	17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 전환(안 제68조제2항 단서)

- 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최근 5년(2020~2024년) 보상대상가액의 평균(33,486,247천원)에 보상률(30%)을 적용하고 예산에 편성된 금액의 평균(2,736,600천원)을 차감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5] 신고자 보상금의 정률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추가재정소요	7,309	7,309	7,309	7,309	7,309	36,545

주: 보상대상가액의 평균(33,486,247천원)에 보상률(30%)을 적용한 후 예산에 편성된 금액(2,736,600천원)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자 보상금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3억 2,400만원, 2031년 73억 2,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66억 2,500만원(연평균 73억 2,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신고자 보호 등 교육 실시 (안 제12조제22호)	15	16	16	16	17	80
신고자 보상금 정률제 전환 (안 제68조제2항 단서)	7,309	7,309	7,309	7,309	7,309	36,545
합계	7,324	7,325	7,325	7,325	7,326	36,625

주: 본 추계는 공익신고제도 교육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의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공익신고제도 교육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의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